

信用狀條件과 書類審查의 基準 檢討

姜 元 辰*

-
- I. 序 論
 - II. 信用狀去來와 書類審查의 基準
 - III. 書類審查 基準의 檢討
 - IV. 結 論
-

I. 序 論

신용장은 은행이 신용장의 제조건과 일치하는 서류에 대하여 지급·인수·매입을 확약한 것이므로 신용장조건과 제시서류에 대한 一致性 檢討는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受益者가 제공한 서류가 신용장조건과 모든 면에서 엄격하게 일치된다면, 대금지급이행은 매우 원활하게 이루어 질 것이다. 그러나 만일 그러하지 못하여 불일치한 서류를 제시받게 되는 은행은 제시된 서류를 拒絕할 것인지 또는 受理할 것인지에 대하여 그 한가지를 결정하여야 한다. 그렇다면 지급이행에 요구되는 서류는 어느 정도 일치되어야 할 것인가? 이에 대해서는 법원의 판례에 의하여 전통적으로 확립되어 온 嚴密一致의 基準과相當一致의 基準이 兩分되어 적용되어 왔다. 그러나 새로운 서류심사기준으로 국제상업회의소는 1993년 신용장통일규칙을 개정하면서 國際標準銀行慣行을, 미국은 1995년 통일상법전 제5편이 개정되면서 標準慣行이라는 기준을 각각 제시하고 있다. 특히 미국은 신용장거래가 국내거래에 보편화되고 또한 신용장 발행인도 은행만이 아닌 여타 금융기관에서도 발행할 수 있기 때문에 '國際' 및 '銀行'이라는 어구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標準慣行이라는 용어를 도입하였다.

* 釜山人學校 貿易國際學部 副教授。

하지만 이와 같은 새로운 서류심사기준이 判例에 의하여 형성된 전통적인 두 가지 원칙과 전혀 다른 새로운 것인지 아니면 엄밀일치 또는 상당일치 중 어느 한가지에 해당되는지 모호하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신용장거래에서의 서류심사기준을 검토하고 실제 서류심사에 따른 은행의 相當한 注意義務의 범위는 무엇이며, 서류 상호간의 矛盾性 및 連繫性에 따른 신용장과 서류의 일치 여부에 대한 판단, 무서류조건과 조건 불일치 서류의 처리 등을 중심으로 검토하여 서류심사기준에 대한 再定立 方案을 提示하고자 하는데 目的이 있다.

본고의 研究方法은 법원의 판례 및 국제상업회의소 은행위원회의 公式 意見을 분석하고 신용장통일규칙과 미국통일상법전의 신용장 규정을 참조하고 영미의 연구자료를 활용하고자 한다.

II. 信用狀去來와 書類審查의 基準

신용장거래와 관련하여 제시된 서류의 수리 여부에 대한 결정은 영미의 판례법을 기초로 성립된 嚴密一致의 基準(standard of strict compliance)과 相當一致의 基準(standard of substantial compliance)으로 兩分되어 적용되어 왔다.

미국의 다수法院은 엄밀일치의 기준을 적용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¹⁾ 미국법협회의 公式 見解²⁾에서도 신용장과 서류의 일치성 여부는 상당일치 기준보다는 오히려 엄밀일치의 기준을 옹호하고 있다. 미국 통일상법전에서는 發行人(issuer; 본고에서는 발행은행으로 통일한다)은 법률의 효력에 의한 환어음 발행인의 讓渡規定³⁾이 있는 경우나 발행의뢰인과 별도의 합의가 없는 한, 발행은행은 엄밀일치 하지 아니한 제시서류에 대하여 수리 거절하여야 한다고 규

1) John F. Dolan, *The Law of Letters of Credit*, Wallen, Gorham & Lamont, 1996, p.6.02 ; Robert M. Rosenblith, "Current Development in Letters of Credit Law", *Uniform Commercial Law Journal*, Vol. 21, Fall, 1988, p. 175 ; Roy Goode, "Abstract Payment Undertakings in International Transactions", *Brooklyn Journal of International Law*, Vol. 22, No. 1, 1996, p. 6 ; Boris Kozolchyk, "Strict Compliance and the Reasonable Document Checker", *Brooklyn Law Review*, Vol. 55, Spring 1990, p.46.

2) American Law Institute, *UCC Revised Article 5 Letters of Credit*, 1995, Article 5-108, Official Comments.

3) UCC, Article 5-113(1995).

정하고 있다.⁴⁾

그러나 엄밀일치라고 하여 신용장조건에 盲目的인一致를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New Braunfels Nat. Bank v. Odiorne*사건⁵⁾에서 법원은 수익자가 'Letter of Credit No.86-122-5' 대신에 'Letter of Credit No. 86-122-S'로 기재되어 지급을 요청한 환어음에 대하여 엄밀일치라고 하여 가혹한 完璧主義를 요구하는 것은 아니라고 判示한 것은 이를 확인하여 주고 있다.

또한 영국 역시 엄밀일치의 기준 적용에 비중을 두고 있다. 슈미토프(Schmitthoff) 教授는 은행은 로버트와 같이 행동할 수는 없지만, 매 건마다 서류를 면밀히 검토하여야 하고 판단을 내려야 하므로 서류심사시 엄밀일치를 주장하지 않으면 위험에 처할 수 있음을 강조하고 있다.⁶⁾

이와 관련하여 한국의 법원에서도 서류가 신용장상의 조건과 문언대로 엄밀하게 합치하여야 한다는 것은 말 그대로 문구 하나도 틀리지 않게 완전히 일치하여야 한다는 의미는 아니며 문구나 의미상에 약간의 차이가 있다고 하더라도 은행이 상당한 주의를 기울여 심사한다면 그 차이가 경미한 것으로서 문언의 의미에 차이를 가져오는 것이 아니고 또 信用狀條件을 전혀 해하는 것이 아니며 문면상 파악할 수 있는 경우에는 신용장조건과 합치하는 것으로 본다⁷⁾고 판시하고 있다.

엄밀일치의 기준은 信用狀法의 產物로 고객과 발행은행간의 계약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서류심사의 필요성과 효율적인 商業的手段을 성공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公共性에 의존하여야 한다.⁸⁾ 서류를 심사하는데 있어, 은행이 엄밀일치의 기준만을 고수하여 書類受理事與否를 결정함으로써 서류의 기재 내용이 本質的變更으로 간주될 수 없는 경우에도 엄밀일치의 기준을 엄격하게 적용한다면, 이는 고객인 신용장발행의뢰인에게 實益이 없는 경우도 있고 오히려 불편을 초래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이에 대한 代案으로 상당일치의 기준은 은행을 포함한 모든 당사자들에 대

4) UCC, Article 5-108(a)(1995).

5) 780. SW 2d 313(Tex. Ct. App. 1989).

6) Clive M. Schmitthoff, *Schmitthoff's Export Trade*, 8th ed., Stevens and Sons, 1986, pp.346-347.

7) 대법원 제1부, 85.5.28, 판결 84 다카 696, 697 판결문 참조.

8) John F. Dollan, "Letter-of-Credit Disputes between the Issuer and its Customer : The issuer's Rights under the Misnamed Bifurcated Standard", *Banking Law Journal* Vol. 150, No.5. 1988, p. 297.

하여 불확실성과 비용이 발생되는 소송에 대한 하나의 해결책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상당일치의 기준은 은행이 특수한 신용장 하에서 각자의 책임소재를 판단하는데 信賴性을 제공하지 못 할 수 있다.⁹⁾

따라서 엄밀일치의 기준 적용이나 상당일치의 기준 적용은 어느 한 측면에서 보면 신용장의 本質을 歪曲시키거나 상거래의 원활을 기하는데 逆機能을招來할 가능성도 없지 않다. 이에 따라 UCP나 UCC도 각각 서류심사 기준에 대하여 새로운 규정을 마련하게 되었다.

UCP¹⁰⁾에서는 書類審查基準(Standard for Examination of Documents)이라는 細部條項에 “규정된 서류의 文面上 신용장 제조건과의 일치성은 본 규칙에 반영되어 있는 國際標準銀行慣行에 따라 결정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한편 UCC¹¹⁾에서는 발행인의 權利와 義務(Issuer's Rights and Obligations)라는 조항에 “신용장 發行人은 정식으로 신용장을 발행한 금융기관의 標準慣行을 遵守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표준관행에 대해서는 UCP와 마찬가지로 정의나 구체적인 예시는 없다. 그러나 UCC를 개정하면서 공표한 UCC 公式 註釋¹²⁾에 의하면 표준관습은 UCP에 의하여 확립되거나 참조된 내용, 금융기관 협회에서 간행된 실무 규칙 그리고 국내 및 지역관습을 참조할 수 있다고 하고 있다.

이와 같은 UCC 조항의 신설은 서류심사기준을 ‘標準慣行’에 의하여 풀어가자는 공통된 고충의 산물로 보인다. 이 UCP 조항 신설과 관련된 국제상업회의소 은행위원회의 見解¹³⁾는 UCP에서의 국제표준은행관행의 導入은 서류를 심사 할 때相當한 注意를 다 하여야 하는 은행의 의무를 제한하는 것이 아니고 상당한 주의가 적용되는 範圍를 決定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또한 UCP에 반영된 국제표준은행관행은 제 37 조 C 항과 같이 透狀上의 물품명세와 기타 서류들의 명세를 구별하고 있는 것처럼 UCP 상에 體系化되어 있다. 즉 “상업송장상의 물품명세는 신용장상의 물품명세와 일치하여야

9) Steven C. Rattener, “Letters of Credit: A Return to the Historical Documentary Compliance Standard”, *University of Pittsburgh Law Review*, Vol. 46, Winter, 1985, p.485.

10) UCP 500, Article 13-a (1993).

11) UCC, Article 5-108(e) (1995).

12) UCC, Article 5-108(1995), Official Comment No. 8.

13) Charles del Busto, *Documentary Credits UCP500 & 400 Compared*, ICC Publishing S.A., 1993, pp. 39-40.

한다. 반면에 기타 서류상의 물품명세는 신용장의 물품명세와 일치하지 않더라도 일반용어로 표기될 수 있다.”는 것은 국제표준은행관행을 반영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UCP나 UCC에서도 은행 또는 금융기관의 표준관행이 무엇인지 구체적인 언급이 없다. 국제상업회의소의 분석은 엄밀일치와 관련하여 사용되는 확인의 기능적인 기준의 부재가 신용장 소송의 확산과 화환신용장계에서의 비용상의 불확실성을 야기하였음에 주목하여 화환신용장에 관한 국제표준은행관행은 正直하고豫見可能한 관습들을 구현하는 규칙들을 포함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어디에 국제표준은행관행이 있는가라는 질문에 대하여, 분석은 단지 많은 그러한 관습들이 이미 UCP상에 나타나 있다고만 답하고 있다. 따라서 돌란(Dolan) 교수는 UCP에서의 서류일치성 판단에 대한 기준은 전혀 새로운 것이 없고 현존하는 미국 관행을 정리한 것에 불과한 것일지 모르며 혹자는 본 조항이 유행의 변화를試圖하는 것으로 결론지을지도 모른다고 평하고 있다.¹⁴⁾ 따라서 미국의 입장은 발행인의 표준관행 준수 결정은 그 표준관행의 증거에 기반을 둔 ‘法院을 위한解釋의問題’로 보고 있으며 따라서 경험 많은 신용장 서류 검토자의 견해는 관행뿐만 아니라 법원에서도 인정되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¹⁵⁾

이와 같이 표준관행의 적용범위는 UCC 제5편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 보다 UCP는 은행 내부에서 해결하고자 하는 취지를 감안할 때 UCP가 더 쉽게 해석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¹⁶⁾

이와 같은 점을 고려하여 볼 때 아직까지도 신용장 조건과 제시 서류에 대한 은행의 서류심사 기준은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할 것이다.

14) John F. Dolan, *op. cit.*, p. 4.06[2][g].

15) James G. Barnes and James E. Byrne, “Revision of U.C.C. Article 5”, *The Business Lawyer*, Vol. 50, August 1995, p. 1454.

16) Joseph D. Gustavus, “Letter of Credit Compliance under Revised UCC Article 5 and UCP 500”, *The Banking Law Journal*, Vol. No. 114, No. 1, Warren, Gorham & Lamont, 1997, p. 64.

III. 書類審查 基準의 檢討

1. 相當한 注意義務

UCP에서는 은행은 신용장에 규정된 모든 서류가 文面上 신용장의 조건과 일치하고 있는가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相當한 注意(reasonable care)를 기울여 심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¹⁷⁾ 따라서 은행은 서류가 外觀上 신용장 조건과 일치하여야 할 것을 확인하고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신용장 조건과 제시서류간의 문면상 일치하여야 한다는 의미는 서류상호간 모순이 없고 그 일치성은 一貫性을 갖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여기에서 초래되는 것은 은행의 주의 깊은 심사에 의해 그 자체로서는 신용장에 일치되는 서류가 외관상 적정하지 않는다는 결과가 된 때에는 서류의 신용장 적합성은 부정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또한 상당한 주의라 함은 제시서류의 문면에 나타나 있는 사항에 대하여 외관상의 점검에 한정되는 것이며 事實點檢에 적용시킬 수 없는 것이다.

대구 魚肉 賣買에 관해서 발행된 신용장 상에 'Salted codfillets with skin, without wings'라는 물품에 대한 송장이 요구되고 있었다. 그러나 매도인이 제시한 송장상의 물품명세는 'Salted codfillets with skin, without wings, and fishbones'라는 것이었다. 매입은행은 魚肉은 실제로 뼈를 포함하고 있지도 않고 ', and fishbones' 앞의 쉼표는 오기된 것이라고 주장하여 發行銀行에 대해서 지급을 요구하였지만 發行銀行은 이를 거절하였다. 이는 매도인이 魚肉에는 지느러미(wings)와 뼈(fishbones)를 포함하고 있지 않음을 나타내려고 한 것이라 해석될 수도 있지만, 은행은 어째든 支給拒絕할 권리를 가져야 한다고 하였다.¹⁸⁾ 이와 같이 은행은 事實點檢에 심사기준을 두지 않고 外觀上의 一致性만을 기준으로 지급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17) UCP 500, Article13-a(1993).

18) Nielsen, WM 1962, S. 78 ; 橋本喜一, “貨換信用狀における提供書類の審査に関する諸問題”, 「民商法雜誌」 第103號, 1990. 171面.

또한 서류점검 상의 注意義務에 대하여 *Sunlight Distribution, Inc. v. Bank of Communications* 사건¹⁹⁾에서 수의자가 引渡하여야 할 전화기에 대한 신용장상의 물품명세는 'Motorola 8900X-2(ETACS) Portable Radio Telephone'이라고 요구하고 있었으나 실제 수의자가 제시한 상업송장은 'S3410A Motorola 8900X-2(ETACS) Portable Radio Telephone'이라고 기재되었기 때문에 발행인은 지급 거절하였다. 이에 대하여 수의자는 소송을 통하여 UCP 규정²⁰⁾을 들어 발행인은 모든 서류들은 상당한 주의를 가지고 점검하고 지급하여 줄 것을 주장하였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상업송장과 신용장간의 물품명세에 焦點을 두고²¹⁾ 주의 깊은 수의자는 신용장에 일치되게 단어 그대로 물품명세를 기재하여야 할 것을 지적하고 서류점검상의 주의의무는 발행인에게 분명한 불일치를 양해하도록 요구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수의자가 제시한 상업송장은 신용장과 불일치 된다고 判示하였다.

신용장의 물품명세와 상업송장상의 견적송장 내용과 관련하여 국제상업회의소에 질의한 事例²²⁾로 신용장 상에는 물품명세를 기재하면서 'goods as per Proforma Invoice No...'라는 문언이 추가되어 있었으나, 견적송장 양식은 첨부되어 있지 아니하였다. 수의자는 신용장조건대로 물품명세 외에 見積送狀과 관련된 추가 문언을 기재한 상업송장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발행은행은 자신이 보관중인 견적송장과 제시된 상업송장을 대조하여 불일치 사항을 들어 서류수리를 거절하였다. 이에 대하여 매입은행은 발행은행의 수리거절의 부당함에 대하여 국제상업회의소에 질의하였다. 이에 대하여 국제상업회의소는 견적송장이 상업송장의 구성요소로 첨부되지 아니하였다면 신용장상의 물품명세와 그 외로 'goods as per Proforma Invoice No...'라는 문언만 文面上으로 기재되어 있으면 족하다고 답하였다.

이와 같이 은행은 신용장조건과 제시서류의 문면 만을 기초로 하여 서류를 심사하여야 한다. 이 경우 독립추상성의 원칙에 의거 은행은 수의자(매도인)와 발행의뢰인(매수인) 사이에 체결된 매매계약이나 기타 거래약정서와는 무관하며 또한 이에 대하여 아무런 구속도 받지 아니한다. 따라서 수의자가 신용장조

19) 94 Civ. 1210(S.D.N.Y. 1995).

20) UCP 400, Article 15(1983); UCP 500, Article 13(1993).

21) UCP 400, Article 41-c(1983); UCP 500, Article 37-c(1993).

22) Jan Dekker, *More Cases Studies on Documentary Credits*, ICC Publication No.489, Case 266, ICC Publishing S.A., 1995.

건과 불일치 하는 서류를 제시할 경우, 발행은행은 이러한 불일치가 중요한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根據契約(underlying contract) 内容에 대한 조사의 필요성은 없는 것이다.

2. 書類의 相互 矛盾性

은행에 제시되는 서류상호간 矛盾된 서류는 불일치로 간주한다. UCP는 특히 “상업송장 상의 물품명세는 신용장 상의 그 명세와 일치하여야 한다. 기타 모든 서류에 있어서 물품은 신용장 상의 물품명세와 모순되지 아니하는 일반 용어로 記述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서류상호간 모순되게 記載된 서류는 불일치로 간주하여 거절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한 UCP는 운송서류, 보험서류 및 상업송장 이외의 서류가 요구되는 경우에는 신용장은 그러한 서류의 발행자, 서류의 문언 또는 자료내용을 명시하여야 한다. 신용장에 그러한 명시가 없는 경우에는 은행은 서류의 자료내용이 제시된 그 밖에 명시된 서류와 모순되지 않으면 그러한 서류를 제시된 대로受理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²³⁾

이와 관련하여 홍콩의 Wing Hang Bank Ltd.가 국제상업회의소 은행위원회에 질의 한 사례²⁴⁾에서 포장명세서(Packing List) 물품명세를 기재하지 않고, 商業送狀의 물품명세와 일치하는 명세, 즉 수량, 스타일 번호와 송장번호를 나타내고 있다면 이를 불일치한 서류로 것으로 간주할 수 있는가라는 질의에 대하여 국제상업회의소는 'UCP 500' 제 37 조 C 항 하에서, 물품은 신용장상의 물품명세와 모순하지 아니하는 일반용어로 기술될 수 있다. 또한 포장명세서는 'UCP 500' 제 21 조의 규정에 따라서 제시할 수 있는 서류이다. 신용장상의 특별한 요구조건을 결하고 있다면, 포장명세서는 그 자료내용이 제시된 다른 서류와 상호 모순되지 않음을 나타내고 있다면 제시된 대로 수리될 수 있다고 회신하였다. 따라서 이 사례에서 제시된 포장명세서에 물품명세를 명시하지 아니한 것은 불일치한 것으로 해석될 수는 없다. 그 이유는 상업송장상의 자료내용과 포장명세서간에 충분한 연계가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러한 결론은 이

23) UCP 500, Article 21(1993).

24) ICC Document No. 470/GE.6(November 15, 1994).

특별한 질의에만 한정되어야 한다는 사실에 주의하여야 하고,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것으로는 간주되지 않아야 한다고 하였다. 이와 같이 신용장조건에 없는 서류로 검사증명서를 수의자가 제시한다면 은행은 제시된 대로 검사증명서를 수리할 수는 있으나 그 검사증명서의 기재내용이 신용장 조건과 모순된다면 불일치로 간주되는 것이다.

이상과 같은 사례를 검토하여 볼 때 신용장조건과 상업송장의 물품명세는 특히 발행은행의 입장에서 보면 엄밀일치기준이 요구되는 경향이 크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그 외의 서류의 경우에는 신용장의 기재사항을 해하는 것이 아닌 경우에는 용인될 수도 있지만, 신용장에서 요구하는 조건을 결하여 기재하거나 신용장의 기재사항과 모순되는 경우 은행은 그러한 서류는 수리거절 할 것이다.

3. 書類 相互間의 連繫性

連繫性(linkage)은 모든 서류가 동일한 물품을 언급하는 것이 분명하도록 하여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銀行慣行이나 법정의 판단에 비추어 볼 때 서류가 상호 적절히 연계되어 있지 않으면, 실제적인 불일치가 있는 것이다. UCP²⁵⁾는 서류심사의 기준 중에 “서류 상호간에 문면상으로 모순되게 표시된 서류는 신용장의 제조건과 문면상 불일치한 것으로 간주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만일 제시되는 서류가 모호한 곳이 있다면 서류제시자의 잘못이다. 이 경우 은행은 서류를 거절하거나 또는 적어도 단지 保護的인 메카니즘 하에서 서류를 수리하게 될 것이다.²⁶⁾

Exotic Traders Far East Buying Office v. Exotic trading U.S.A., Inc. 사건²⁷⁾에서 신용장 및 선적 1일 전에 선적 통지한 텔레스(Telex) 상에는 ‘FOB Seoul’이라고 명시하고 있으나, 제시된 상업송장 상에는 ‘FOB Korea’라고 기재되어 있었다. 요구된 서류들은 일람후 30일 지급 환어음에 상업송장, 특별미국 세관송장, 포장명세서, 수의자가 서명한 검사증명서, 항공화물운송장 및 선적 1

25) UCP 500, Article 13-a(1993).

26) Clive M. Schmitthoff, “Discrepancy of Documents in Letter of Credit Transactions”, *Journal of Business Law*, 1983. p. 46.

27) 9 UCC Serv. 2d 698, 717 F. Supp. 14(D.C. Mass. 1989).

일 전 선적통지 내역 텔레스 사본을 제시하도록 하였다. 상업송장을 제외한 모든 서류 상에는 “권총집은 대한민국 서울에서 적재되었다.”(The holsters had been shipped from Seoul, Korea)라고 명시되어 있었다.

그러나 발행은행과 발행의뢰인은 신용장 조건과 제시서류 불일치를 이유로 수익자의 지급요구를 거절하였다. 이에 대하여 법원은 비록 상업송장 상에 ‘FOB Korea’라고 명시하고 있지만 여타 서류들은 신용장 조건을 충족하고 있고, 상업송장의 물품은 서울에서 인도되었으므로 신용장과 제시서류의 技術的 인 불일치(technical inconsistencies)는 별도의 유효한 상거래상의 숨은 의미를 정당화시키지 아니하므로 매수인, 즉 발행의뢰인은 은행에게 지급의무가 있다고 判示하였다. 이는 용어 사용이 다소 미숙하더라도 기타 서류상의 연계성을 고려하여 신용장과 상업송장상의 사소한 불일치를 인정한 사례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서류의 수리 여부의 판단과 관련하여 앞에서 고찰한 홍콩의 Wing Hang Bank가 질의한 사례에서와 같이 서류 기재 내용간에 充分한 連繫(sufficient link)가 있음을 파악할 수 있으면 되기 때문에 海上船貨證券의 경우, 선박회사의 입장으로서는 자신이 수령한 물품에 대한 세부내용에 대한 것까지는 모르기 때문에 선화증권 상의 물품에 대한 기술은 상업송장보다도 간략하게 일반적인 용어로 기재하여도 용인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근거는 *Laudisi v. American Exchange National Bank* 사건²⁸⁾에서 신용장이 ‘Alicante Bouche grapes’의 거래를 위하여 발행된 상업송장에는 ‘Alicante Bouche grapes’로 동일하게 물품명세가 기재되어 있었지만, 선화증권에는 단순히 ‘grapes’밖에 기재되어 있지 않았다. 법원은 이것으로 충분하다고 판시한 사례에서도 찾아 볼 수 있다.

본질적으로 상업송장과 선화증권 등 여타서류는 그 기능과 유용성 면에서 다르다. 특히 선화증권은 발행방식과 서식의 내용을 구성하는 데 있어 법률적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따라서 제시되는 서류가 모두 한가지로 동일하게 기재된다면 개개의 서류 목적으로 보아 無意味한 것이다.

신용장거래에 따른 제시서류의 심사는 外觀的인 심사이고 實質的인 審查가 아니기 때문에 서류명칭이 상업송장이 아닌 포장명세서나 중량증명서와 같은 부수적인 일반서류일 경우에는 서류상호간 문면상 모순되게 표기되지 않아야

28) 239 N.Y. 234, 146 N.E. 347 (1924).

불일치 서류로 간주되지 아니할 것이다.

4. 無書類 條件

신용장은 전통적으로 서류제시를 조건으로 하는 확약이다. 無書類條件(non-documentary conditions)이란 신용장발행인이 어떤 사실(일반적으로 근거계약의 이행과 관련되어)의 獨立的인 결정을 하도록 요구하는 조건을 말한다.²⁹⁾ 여기서 條件(conditions)은 장래에 발생하여야 할 불확실한 조건을 의미한다. UCP나 UCC도 무서류 조건의 처리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으나 신용장의 당사자는 서류와 신용장 사이의 관련성과 일치성의 가능성은 고려하여야 한다. 신용장거래에서 모든 당사자는 서류로 거래하는 것으로서 서류거래의 원칙을 기본으로 하고 있다.

무서류 조건은 발행의뢰인이 은행에게 서류증빙이 입증되지 않은 조건을 만족하고 있을 때에 지금이 이루어지는 신용장발행이 요구될 경우에 발생된다. 예를 들면 船齡 15년 이상 선박에 선적을 금지하는 것을 확약하는 신용장은 무서류 조건으로 지급이 이루어진다. 미국에서는 보증신용장 사용의 다양화로 무서류 조건이 이용되는 결과를 놓고 있다.³⁰⁾

UCP³¹⁾에서는 “신용장이 그와 일치하게 제시되어야 할 서류에 대한 언급 없이 조건만을 포함하고 있는 경우에는 은행은 그러한 조건이 言及되지 아니한 것으로 看做하고 이를 無視한다.”고 무서류조건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독일의 Preussag Handel GmbH가 국제상업회의소 은행위원회에 질의한 사례³²⁾에서 선적은 ‘Suez’를 경유하여 ‘Mombasa’항으로 항해하는 해상운송선에 의하여야 함을 규정하는 신용장에서 은행은 일치성을 확인하기 위한 선화증권상의 효과에 대한 질의에 대하여 동 은행위원회는 ‘UCP 500’ 제 13조 (c) 항은 신용장이 신용장에 따라서 제시되어야 하는 서류를 명시하지

29) Sandra Stern, “Varying Article 5 of the UCC by Agreement.” *The Banking Law Journal*, Vol. 114, No. 6, Warren, Gorham & Lamont Publication, June 1997, p. 526.

30) Adam B. Strauss, “Disguised Guarantees: Liability for Issuers Ignoring Non-documentary Conditions in Letter of Credit”, *The Banking Law Journal*, Vol. 115, Warren, Goham & Lamont, 1998, p.1046.

31) UCP 500, Article 13-c(1993).

32) ICC Document 470/GE.16, (November 28, 1994).

않고 조건을 나타내고 있다면, 은행은 그러한 조건이 명시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하고, 그것들을 무시할 것임을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만약 조건이 신용장에 규정된 서류에 명백하게 연계될 수 있다면, 조건은 무서류 조건으로 간주되지 않는다. 'UCP 500'의 제 23 조 (a) 항 (ii) 와 제 23 조 (a) 항 (iii)은 제 23 조의 해상/해양선화증권에서 요구된 것에 대하여 선화증권이 서류의 일치성을 만족시키는 어떤 세부사항을 나타내고 있음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한 선화증권은 다른 자료 사이에서 적재항, 양륙항 그리고 선적일을 나타내어야 한다. 따라서 UCP 500 제 23 조의 조건에 일치시키기 위하여 은행은 그러한 표현이 신용장과 서류 그 자체가 관계가 있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해상운송선은 수에즈를 경유하여 항해될 것이라는 것이 해상선화증권상에 證據를 요청하는 것은 정당화되었다.

한편 UCC³³⁾에서는 무서류조건에 대하여 “만일 신용장을 구성하는 確約이 무서류조건을 포함한다면 발행인은 무서류조건을 무시한다. 만일 무서류조건이 언급되지 않았다면 그대로 처리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은행은 무서류조건을 포함하여 신용장을 발행, 확인 또는 통지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³⁴⁾

UCP 제 5차 개정과 관련하여 무서류 조건에 대한 버스토(Busto)의 見解를 보면 만일 무서류조건이 사소한 것이라면 발행은행은 그것을 무시하고 오직 신용장에 요구된 서류의 일치성을 근거로 의사결정을 진행시킬 수 있다. 그러나 무서류조건이 매우 중요한 것인 경우에 그것을 무시하고 신용장 거래를 행하였을 경우에 발생될 수 있는 문제점을 고려해 볼 수 있다. 즉, 어떠한 개별 서류로 ‘런던에서 홍콩까지의 선적’ 또는 인코텀즈에 따른 ‘CIF Hong Kong’ 등의 조건을 확인할 것을 요구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조건은 충족되어져야 하고 제시된 서류에 언급되어져야 한다고 하였다.³⁵⁾

해상운송의 경우 海上船貨證券은 선적물품의 권리를 나타내는 중요서류인데도 불구하고 예컨대 신용장이 상업송장과 포장명세서를 요구하면서 선적은 11월 30일 까지 런던에서 홍콩까지 이루어 져야하며 가격조건은 ‘CIF Hong Kong’으로 명시되었다고 가정할 때 해상선화증권을 반드시 요구해야 할 필수적인 서류임에도 불구하고 동 서류가 무언급 되었기 때문에 위의 규정대로 발행

33) UCC, Article 5-108(g)(1995).

34) Adam B. Strauss, *op. cit.*, p.1050.

35) Charles del Busto, *op. cit.*, p.42.

은행이 무시하고 제시된 상업송장과 포장명세서 서류만을 가지고 제시된 대로 지급이행을 하였을 때 발생될 수 있는 문제점은 크다 할 것이다. UCP의 취지를 보면 화환신용장의 본질은 서류거래라고 전제할 때 무서류조건의 문제점에 대한 混亂은 야기될 수 있다.

5. 條件不一致書類의 處理

수익자가 신용장조건과 文面上 불일치 하는 서류를 제시하여 지급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발행은행은 이러한 지급을 거절할 권리를 가지며 또한 거절하는 것이 신용장거래에서 발행은행이 행하여야 할 의무이다.³⁶⁾

신용장조건 불일치서류에 대한 통지와 관련하여 *Bankers Trust Co. v. State Bank of India* 사건³⁷⁾에서 발행은행은 수익자의 서류를 1988년 9월 9일에 수취하였고 서류심사와 발행의뢰인과의 교섭으로 시간을 보낸 후 동월 30일에 불일치사항을 통보하며 지급을 거절하였다. 법원은 발행은행의 서류거절통지가相當한期間(reasonable time)을 경과하여 너무 늦게 이루어졌고 형식상 적절하지 못하므로 부당하다고 판시하였다. 또한 *Hing Lip Hing Fat Co. Ltd. v. Daiwa Bank* 사건³⁸⁾에서 수익자는 1988년 9월 9일에 발행은행에 서류를 제출하였고 발행은행은 서류심사 후 동월 15일에 불일치사항을 통지하면서 지급을 거절하였고 이후 최초의 불일치사항의 통지에는 누락되었던 불일치를 추가적으로 지적하였다. 법원은 발행은행이 지급거절을 하기 위해서는 발견된 모든 불일치사항에 대한 설명과 신속한 서면통지가 되어져야 하므로 지급거절은 정당하지 않다고 판시하였다. 이 사건은 1983년 'UCP 400'에 의한 것으로 서류심사기간으로 상당한 기간이란 개념이 사용되었으나 1993년 'UCP 500' 적용 이후부터는 서류를 거절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은행은 서류수령 다음날부터 제7은행영업일의 마감시간을 경과하지 아니한 범위 내에서 그러한 취지를 통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³⁹⁾ 이와 같은 발행은행의 지급거절은 발행은

36) Dr Anu Arora, "The dilemma of an issuing bank : to accept or reject documents tendered under a letter of credit", *Lloyd's Maritime and Commercial Law Quarterly*, 1984, p.15

37) *Financial Times Rep.*, Aug. 6, 1990; F.M.Ventris, *Bankers' Documentary Credits*, Lloyd's of London Press Ltd., 1990, pp.351-354.

38) (1991) 2 H. K. L. R.

행이 규정된 서류심사기간을 초과하여 지급거절을 통지하거나 또는 최초의 불일치사항에 대한 거절통지에서 누락된 불일치사항을 제시하여 추가적으로 지급을 거절하는 경우가 많다.

또한 조건불일치서류에 대하여 *返還請求權*이 있는지 여부는 서류가 신용장 조건에 일치하고 있지 않다는 취지의 통지를 받았을 때에 서류를 매입은행 또는 수익자는 동 서류를 반환시킬 것을 요구하는 권리가 있다. 조건불일치의 통지가 있는 즉시 수익자에게 반환청구권이 발행하는 것은 아니지만 紿付銀行에 대한 어음의 상환 내지 지급자금의 반환이 당연히 수반되어야 한다. 그러나 'UCP 500'에서는 서류가 문면상 신용장조건과 불일치한 때에는 은행은 서류수령 익일로부터 제7영업일 이내에 독자적인 판단으로 발행의뢰인과 交渉權을 행사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다.⁴⁰⁾

그 다음 조건불일치서류의 訂正 可能性과 관련하여 미국의 National Sun Industries가 국제상업회의소 은행위원회에 질의한 사례⁴¹⁾에서 취소불능신용장에서 서류가 최초제시에서 일치하여야 한다는 아무런 명시도 포함하고 있지 아니한 신용장에서 수익자는 신용장 유효기간 내에 불일치서류를 일치된 서류와 代替하는 것이 허용되는지 여부에 대한 질의에서 동 위원회는 수익자는 추심의뢰은행은 신용장의 유효기일 전에 서류대체가 행하여지고, 'UCP 500' 제43조에 규정된 유효기일의 제한과 관련된 견지에서, 허용된 시간 내에 서류가 제시되면 신용장조건에 일치시키기 위하여 서류를 제시할 가능성을 항상 가지고 있으며 신용장의 제 조건에 일치하는 대체서류나 수정된 서류가 신용장의 유효기일 내에, 'UCP 500' 제43조의 조건과 신용장에 규정된 다른 조건에 따라 다시 제출되는 것을 나타내는 것은 발행은행의 특별한 승낙 없이 행하여질 수 있다고 답하였다. 이러한 경우의 불완전이행의 용인은 서류를 정정하여 신용장조건에 일치시키는 것이 요구되는 조건부 추인이다. 이와 같은 不完全履行의 追認問題는 발행은행이나 발행의뢰인에게 불리한 영향을 끼치지 않는 한 신의칙에 바탕을 두어 허용되어야 할 것이다.

UCP⁴²⁾에 의하면 최초의 거절통지 이후에 또다시 변경 또는 추가하여 서류

39) UCP 500, Article 13-b(1993).

40) UCP 500, Article 14-c(1993).

41) ICC Document 470/GE.10,(September 27, 1994).

42) UCP 500, Article 14-d-ii(1993); Jan Dekker, *op. cit.*, Case No. 209.

불일치를 이유로 거절 통지할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모든 불일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하며 그러한 통지는 서류를 송부한 은행에게 또는 수익자로부터 직접 수령한 경우에는 수익자에게 행하도록 하고 있다.

IV. 結論

신용장조건에 따른 서류심사기준은 法院의 判例에 의하여 형성된 바와 같이 이른바 엄밀일치기준과 상당일치기준으로相反되어 적용되어 왔다. 판례의 동향은 미국이나 영국도 엄밀일치의 기준 적용이 다수로 나타나고 있다. 1993년 'UCP 500'에서부터 국제상업회의소는 신용장과 관련된 시비를 상업적 측면을 고려하여 법정보다는 관계당사자간에 은행 내부에서 해결하고자하는 취지로 국제표준은행관행에 따른 새로운 서류심사 기준을 제시하였고 이어 1995년 UCC의 신용장규정을 개정하면서 서류의 수리와 관련하여 금융기관은 표준관행에 따라 신용장 조건과 문면상 엄밀일치 하는 서류를受理하여야 하며 표준관행 준수 여부에 대한 결정은 법원의 해석에 따를 문제라고 규정하였다.

엄밀일치의 기준 적용은 신용장의 신뢰성과 측면에서 신용장 본질에 부합될 수 있으나 하찮은 一語一句에 이르기까지 완전일치 되도록 기계적으로 엄격히 적용된다면 상업적인 측면에서 實益을 상실할 수도 있으며 상당일치의 기준은 독립추상성의 원칙에 위배되어 신용장의 신뢰성을 훼손시킬 수 있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 신용장거래의 국제통일관습으로 위상을 갖고 있는 UCP에서도 이에 따른 새로운 서류심사기준인 국제표준은행관행은 그 語義가 定義되지 않고 있으며, 그 적용에 대한 예시를 규정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 또한 이미 UCP에 국제표준은행관행이 다수 구현되어 있다는 주장도 모호하다. 특히 미국은 UCC에서 표준관행준수여부는 법원의 해석에 따를 문제임을 분명히 하고 있어 판례법과 연관시키고 있다.

신용장거래에서 서류심사를 위한 상당한 주의 의무는 발행은행은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여 문면상 외관상의 서류심사를 행할 것을 요구받는다. 신용장조건과의 제시서류간의 불일치가 서류를 심사하는데 있어 상당한 주의를 기울이는 은행에 의하여 적법하게 간과될 수 있을 경우에 그 불일치는

은행으로 하여금 대금상환을 청구할 권리를 부여할 것이다. 신용장거래는 신용장의 문면상의 조건과 제시하는 서류 또는 서류 상호간에 모순이 있으면 불일치로 간주된다. 수익자가 작성하는 서류와 운송인이나 보험자가 발행하는 서류는 그 기능과 유용성이 다르기 때문에 모든 서류가 동일하게 작성 될 수는 없지만 서류 상호간에는 충분한 連繫性이 있어야 한다. 또한 은행은 무서류조건을 포함하여 신용장을 발행하거나 확인 또는 통지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만일 조건만 포함되어 있을 경우에는 이를 무시한다. 신용장조건 불일치서류에 대해서는 서류의 返送과 관련된 交涉權을 행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조건불일치서류의 대체에 따른 불완전 이행의 追認 與否는 信義則에 따라 신용장 유효기간 내에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아무튼 신용장거래에서의 수익자는 은행의 서류심사가 까다로운 관료적 근거가 아니라 私的 責任을 회피하기 위하여 거절한다는 것을 깨달아야 할 것이며 특히 상업송장상의 물품명세는 신용장의 물품명세와 엄밀일치 되게 작성하여 제시하여야 한다. 한편, 은행은 신용장거래에 따른 서류심사와 서류의 일치성판단은 高度의 專門的 思考가 요구되는 어려운 문제이긴 하지만 실질적으로 해가 되지 아니하는 輕微한 오타 등의 불일치는 법원의 판례 및 국제상업회의소의 공식 의견에서 제시되고 있는 상업적인 면도 考慮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국제표준은행관행이라는 미명하에 은행의 자주적 재량권은 濫用되어서는 아니 될 것이다.

신용장조건과 제시서류의 일치성판단의 기준은 보통법의 원칙적용에서의 엄밀일치 또는 상당일치 기준 적용에 대한 對立은 좀처럼 解消되지 않을 것 같다. 또한 국제상업회의소의 국제표준은행관행은 전통적인 상당일치기준과 비교하여 볼 때 상업적 관점을 고려한 서류심사기준의 탄력성 면에서는 一脈相通하지만 동일한 기준으로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서류심사에 따른 일치성 판단 기준으로 확립되어 온 엄밀일치 기준 및 상당일치 기준과 국제표준은행관행에 대한 적용상의 혼란 방지를 위하여 이를 調和시켜 論者는 다음과 같은 方案을 提示한다.

신용장거래에서의 서류심사기준은 엄밀일치의 기준 적용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발행은행과 발행의뢰인 사이에는 交涉權 活用 등 국제표준은행관행에 따른다. 따라서 이 부문의 중요성에 비추어 볼 때 서류심사기준에 대한 구체적인 指針도 향후 개정되는 UCP 상에 명시되어야 할 것이다.

參 考 文 獻

- American Law Institute, *Uniform Commercial Code Revised Article 5 Letters of Credits*, 1995.
- Arora, Dr Anu., "The dilemma of an issuing bank: to accept or reject documents tendered under a letter of credit", *Lloyd's Maritime and Commercial Law Quarterly*, 1984.
- Barnes James G. and Byrne James E., "Revision of U.C.C. Article 5", *The Business Laywer*, Vol. 50, August 1995.
- Bennett, Haward N., "Strict Compliance under U.C.P. 500", *Lloyd's Maritime and Commercial Law Quarterly*, LLP Ltd., 1997.
- Busto Charles del, *Documentary Credits UCP500 & 400 Compared*, ICC Publishing S.A., 1993.
- Dekker Jan, *More Cases Studies on Documentary Credits*, ICC Publication No. 489, ICC Publishing S.A., 1995.
- Dolan John F., "Letter-of-Credit Disputes between the Issuer and its Customer: The issuer's Rights under the Misnamed Bifurcated Standard", *Banking Law Journal*, Vol. 150, No.5. 1988.
_____, *The Law of Letters of Credit*, Wallen, Gorham & Lamont, 1996.
- Goode, Roy, "Abstract Payment Undertakings in International Transactions", *Brooklyn Journal of International Law*. Vol. 22, No. 1, 1996.
- Gross Ronald S. and Veltri Stephen C., "The Uniform Commercial Code Survey", *The Business Lawyer*, American Bar association, August 1995.
- Gustavus, Joseph D., "Letter of Credit Compliance under revised UCC Article 5 and UCP 500", *The Banking Law Journal*, Vol. 114 No. 1, 1997.
- Gutteridge H.C., and Megrah Maurice, *The Law of Banker's Commercial Credits*, 7th ed., Europa Publications Limited, London, 1984.
- Harfield Henry, *Bank Credits and Acceptances*, 5th ed., The Ronald Press Company, 1974.
- International Chamber of Commerce, *More Case Studies on documentary Credits, problems, queries, answers*, ICC Publishing S.A., 1991.
- Kozolchyk Boris, "Strict Compliance and the Resonable Document Checker",

- Brooklyn Law Review*, Vol. 55, Spring 1990.
- Meyero Wits Steven A., *Banking Law Journal Digest*, 8th ed., 1997
Cumulative Supplement No. 1, Warren, Gorham & Lamont, 1996.
- Quinn Thomas M., *Quinn's Uniform Commercial Code Commentary and Law Digest*, 2nd ed., Warren, Gorham & Lamont, 1996.
- Rattener Steven C., "Letters of Credit: A Return to the Historical Documentary Compliance Standard", *University of Pittsburgh Law Review*, Vol. 46, Winter, 1985,
- Rosenblith Robert M., "Current Development in Letters of Credit Law", *Uniform Commercial Law Journal*, Vol. 21, Fall, 1988.
- Schmitthoff Clive M., "Discrepancy of Documents in Letter of Credit Transactions", *Journal of Business of Law*, Stevens and Sons, 1983.
- Schmitthoff Clive M., *Schmitthoff's Export Trade*, 8th ed., Stevens and Sons, 1986.
- Uniform Commercial Code Case Digest*, Clark Boardman Callaghan, 1995.
- White James J., "The Influence of International Practice on the Revision of Article 5 of the UCC", *Northwestern Journal of International Law & Business*, Vol. 16, No. 2, Winter 1995.

ABSTRACT

Terms of Letter of Credit and Standard for Examination of Documents

Kang, Won Jin

In this paper, I examined the terms of letter of credit and standard for examination of documents. In connection with the test of standard, I reviewed the bank's reasonable care, inconsistence and linkage between documents, non-documentary conditions and the treatment of discrepant documents. Traditionally credit law is founded on two principles such as the standards of strict of compliance and substantial compliance, but these standards are not consistency. Moreover although the Uniform Customs and Practice for Documentary Credits(UCP) introduces a new standard for examination of documents by incorporating international banking practice, the standards for documentary compliance have created ambiguity.

Accordingly, I suggest that the standard requires strict compliance between party concerned in letter of credit transactions but only requires international standard banking practice in customer relationship. Therefore the standard and the specific guideline should be prescribed in the next version of the UCP.

Key Words : Letter of Credit-Standard-Examination of Documents